

고맙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총리령 제1813호, '22.6.3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공포, '23.1.1.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생산연월일'과 '산란일'을 식품등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

2. 동 개정령은 관보('22.6.30.)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13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협회, 본부(55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주무관 **조효정** 사무관 **이지영** 식품표시광고정 전결 2022.6.30. **박동희**

협조자

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9497 (2022. 6. 3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183 팩스번호 043-719-2180 / chipchipstar00@korea.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